

VDT증후군의 요양 및 보상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

김 은 희

VDT작업으로 인한 경견완장해의 심각성

원고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교정을 보는 K출판사 전산실. 전체 인원이 약 50명인데, 대부분의 근무자가 안경을 끼고 일하고 있다.

허리나 어깨가 아

파 '인병휴가'를 내고 쉬는 여직원이 2명 있으며, 이 외에도 심한 VDT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중 특히 심한 여직원의 경우를 들어보자.

6년전 입사했을 당시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6시40분부터 9시30분까지 하루 10만타를 입력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하자 입사한 지 1년도 안되서 어깨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패스를 항상 몸에 붙이고 살았다.

어깨와 팔이 너무 아파서 삼각건을 하고 일하기도 하며, 밤에는 목이 너무 아파 베개를 뱉 수도 없었다. 머리를 감기 위해 고개를 가누기도 힘들어지고, 시간내어 즐기던 기타와 피아노도 통증 때문에 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사무자동화가 진행되어 기계와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컴퓨터단말기를 하루종일 사용하는 단순사무직종에는 대부분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무자동화가 더욱 진척되고 노동강

도가 강화되며, 이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VDT증후군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VDT작업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는 경견완장해 및 신체적 영향, 눈에 대한 영향, 전자파에 의한 영향,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며 이들을 포괄적으로 VDT증후군이라고 한다. 이글에서는 주로 VDT작업으로 인한 경견완장해의 요양 및 보상에 관해 다루고자 한다.

경견완장해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VDT증후군과 같은 사무직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따른다. 다음과 같은 제도적 측면과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VDT증후군이 업무상 질병으로 제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금융·보험업 등 사무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사업장이 아직 산재보상보험법에 강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산재처리와는 달리 매 질병마다 개별 사업주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병에 대한 일반 의료인의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진단을 받기가 어렵다. 특히 VDT증후군, 경견완장해 등의 진단명에 대해 생소할 뿐 아니라 이들 질병의 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사업주는 직업관련성에 대한 의료인이나

보상행정 전문가의 판단을 일단 부정하려는 경향이 크다. 더구나 의사의 진단명이 다른 경우나 직업관련성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대개는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넷째, 고통을 안고 있는 근로자 스스로도 직업병을 인정받으려는 적극적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VDT증후군에 대한 치침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한편 보건관리자와 의료인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대개 근로자들은 비특이적 증상을 호소하는데, 보건관리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개인적 문제로 치부해 버리지 말고, 그가 일하는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 동료들의 공통적 건강문제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0년대에 이르러 은행 등에서 VDT증후군에 대한 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경견완장해의 실태가 부각되기 시작하여 최근 한국통신공사의 114교환원의 경견완장해가 산업보건에 있어서 중요한 주

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1995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경견완장해'가 명문화되기에 이르렀다.

경견완장해는 사무직종의 VDT작업외에도 일반 제조업의 단순반복작업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된 업무상 질병의 통계를 보더라도 경견완장해 등 근골격계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간 개별적 질병으로 처리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 마련된 제도를 근거로 좀더 적극적으로 직업성 경견완장해를 밝혀내는 것은 이의 예방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VDT증후군의 요양과 관련된 법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의 보상)
시행령 제5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표〉 업무상 질병 인정현황

(단위 : 명, %)

종 류	1992*	1993*	1994 *	1995 *	1996. 1~6 *
계	1,328(100%)	1,413(100%)	2,183(100%)	3,132(100%)	1,838(100%)
직업성요통			699(32.0%)	903(28.8%)	457(24.9%)
경견완장해			20(0.9%)	128(4.1%)	120(6.5%)
뇌혈관 및 심장질환	기타3(0.23%)	기타6(0.42%)	648(29.7%)	678(21.7%)	393(21.4%)
직업성암			1(0.0%)	2(0.1%)	-(0.0%)
직업성천식			8(0.4%)	14(0.5%)	4(0.2%)
감염성질환			2(0.1%)	2(0.1%)	7(0.4%)
유기용제 중독	90(6.78%)	114(8.07%)	45(2.1%)	184(5.9%)	130(7.1%)
진폐증	877(66%)	1,001(70.84%)	572(26.2%)	1,018(32.5%)	414(22.5%)
소음성난청	311(23.4%)	257(18.19%)	130(6.0%)	155(5.0%)	289(15.7%)
특정화학물질	8(0.6%)	8(0.57%)	35(1.6%)	7(1.1%)	17(0.9%)
금속·중금속 중독	39(2.94%)	27(1.91%)	23(1.1%)	13(0.4%)	7(0.4%)

자료출처) * 노동부, 산업체분석(1992, 1993)

· 국회, 1996년 정기국감자료 재정리(1994~1996.6)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13. 전신수·타이피스트·필결수 등의 수지의 경련 및 서경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5.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가.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 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질병에 이환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선천성 이상, 류마チ스관절염, 퇴행성질환, 통풍 등 업무상 질병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육·건·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 (2) 내장탈
 - (3) 경견완증후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질병

- (가) 경추부의 신경 또는 기능장애
- (나) 견갑부의 극상근증후군·전초염·활액낭염
- (다) 상완 및 전완부의 상파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 (라)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기능장애

나. 가목 (3)에서 '경견완증후군'이라 함은 상지에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에 6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경부·견갑부·상완부·주관절·전완부 및 그 이하에서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을 말한다.

단계별 대책과 치료 : 회복과 재활을 위하여

경견완증후군의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조기치료이다. 노동자가 증상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보건관리자에 의해 초기에 적절히 발견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계별 대책과 치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업무상 질병 인정현황

구 분	증상 및 특성	단계별 대책과 치료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중 상지의 통증과 피로를 느끼나 휴일에는 증상이 없어진다. - 작업수행능력의 현저한 감소는 없다. - 신체적 이상소견은 없다. - 이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정상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도구 및 작업환경에서의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한다. - 작업속도를 줄이고 시간의 노동과 철야근무를 중단한다. - 정기적으로 비반복적 작업과 반복적 작업을 번갈아 한다.(작업교대) - 정기적으로 휴식과 근육이완운동을 한다. - 증상의 재발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며 수면장애가 있다. - 반복작업 수행능력이 떨어진다. - 신체적 이상소견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상태가 수개월 지속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관련된 상지의 업무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재활이 필요하다. - 통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금하고 가족의 도움도 필요하다. - 작업치료의 평가와 상담을 받는다. - 임상적·심리적 평가와 자문을 받는다.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에도 증상이 계속되며 잠을 잘 못잔다. - 가벼운 업무나 일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신체적 이상소견이 있다. - 이 상태가 수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목과 손에 지지대를 한다. - 증상경감을 위해 물리치료를 받는다. -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약물치료를 한다. - 재활상담을 한다.

〈참고〉 VDT증후군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 산소결핍공기 ·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온 · 저온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계측감시 · 컴퓨터단말기조작 ·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4. 환기 · 채광 · 조명 · 보온 · 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컴퓨터단말기의 조작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내는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창 · 벽면 등은 반사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할 것.
3. 컴퓨터단말기 등에서 발생되는 유해광선 또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광선 · 전자파 차단 또는 중화장치를 설치할 것.
4. 컴퓨터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및 의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따라 그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연속적인 컴퓨터단말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중에 적정한 휴식 시간을 부여할 것.

참고자료

1. 구로의원, 노동과 건강연구회, 대림엔지니어링 (주) VDT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1993. 6.
2. 구로의원, 서울신탁은행 근무자들의 VDT 증후군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1994. 7.
3. 구로의원, 컴퓨터작업자의 경견완장해, 1995. 4.
4. 노동과 건강연구회, 건강한 삶 안전한 노동-사무직 노동자의 VDT증후군 연구-, 1991. 3.
5.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1995. 1.
6.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 5.
7. 박계열, VDT작업자의 자각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3. 6.
8. 송재철, 전화교환원 경견완장해 실태조사(서울 지역), 경견완장해의 대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6. 8.
9. 임상혁, 우리나라 경견완증후군의 실태와 대책, 한국산업의학회, 1996. 10.
10. 통신개발연구원노동조합, VDT증후군 문제백서, 1991. 11.
11. 한국통신공사노동조합, 경견완장해 발생의 심각성과 대응방안, 경견완장해의 대책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1996. 8.

